

『재산영농조합』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1. 6. 25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1. 6.
- 다. 상정일자 : 2001. 6. 28 제86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재산영농조합 법인의 「성장작목 시범단지」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상환도래된 원금을 대환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결 자

- 정부의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자금 4억 7,000만원에 대하여 평창군수를 채무보증하여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군수가 채무보증한 20억원중 2001년 상환도래액 1억 3,400만원, '99년과 2000년도 대환자금 2억3,600만원등 총 4억 7,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함

4. 검 토 결 과

- 먼저 재산영농조합 법인의 채무보증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
 - 성장작목 투자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, 도비 11억 6,400만원이 간이집하장, 농산물 포장센터, 공동퇴비 제조장, 교육장 각1동에 투자되었고
- 시범단지 조성사업 50억원중 융자액 20억원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'92. 6.29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년 7월14일 채무보증하였음.
- 금번 채무보증 내용은 '99년 대환액 129,565천원, 2000년도 대환액 206,000천원과 상환도래액 134,440천원등 총 470,000천원을 대환하는 것임.

-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을 채무보증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- 본 건에 대하여 평창군수 및 재산영농조합 법인의 상환의지와 대책을 추궁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함.